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6.11.23(수) 10:00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#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일

## 3. 제안 이유

- 투자유치 불리지역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결산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 4. 주요내용

-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투자유치위원회 기능 추가(안 제5조)
  - 기금 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13조④항)
  - 종전 2016년 12월 31일 ⇒ 개정 2021년 12월 31일

## 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투자유치 불리지역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결산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투자유치위원회 심의

대상에 포함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

- 다만, 관련 부서로부터 최근 3년간 기금출연 현황과 사용내역 등 기금운용에 대한 현황을 청취해야 할 것임.